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매각물건명세서

사건	2024타경37781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물건번호	1	작성 일자	2026. 2. 10.	담임법관 (사법보좌관)	남기영	<u>전자서명완료</u>
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최선순위 설정	2016. 8. 24. 압류			배당요구종기	2025. 4.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과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점유자 성명	점유 부분	정보출처 구분	점유의 권원	임대차기간 (점유기간)	보 증 금	차 임	전입신고일자· 외국인등록(체 류지변경신고) 일자·사업자등 록 신청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여부 (배당요구일자)	
한국토 지주택 공사	2층 206호	등기사항전 부증명서	주거 임차권 자	2012. 11. 9. 부터	20,000,000		2010. 10. 28.	2012. 11. 5.		
<p><비고></p> <p>한국토지주택공사: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양도함. 주택임차권 등기일은 2021. 2. 4.임.</p> <p>※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p>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p> <p>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5번 주택임차권(2021. 2. 4.등기) 있음. (보증금 20,000,000원, 전입일 2010. 10. 28, 확정 일자 2012. 11. 5)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단, 주택임차권의 승계인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대항력포기서 및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확약서"가 제출됨.</p> <p>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p> <p>해당사항없음</p> <p>비고란</p>										

※1: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2: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부동산의 표시

2024타경37781

[물건 1]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82-22

우리오피스텔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62번길 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제206호

철근콘크리트조

23.1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82-22

330.8㎡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33,080분의 1,118

감정평가액

22,000,000

회차

기 일

최저매각가격

매수신청보증금

1회

2026.02.02

15,400,000

1,540,000

2회

2026.03.16

10,780,000

1,078,000

3회

2026.04.13

7,546,000

754,600

4회

2026.05.11

5,282,000

528,200